

서울특별시-강원도 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

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)와 강원도(이하 “강원도”)는 실질적인 MICE 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서울시와 강원도의 특화된 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내·외 MICE 공동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MICE 유치확대 및 MICE 참가자 만족도 증대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력사항)

서울시와 강원도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MICE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·외 MICE 공동 마케팅
2. 양 시도 연계 MICE 행사 투어프로그램의 지원금 지원
3. DMZ(군사분계선) 투어 등 남북평화관광 활성화
4. 그 외 공동 MICE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3조(비용부담)

서울시와 강원도는 마케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광고비 및 지원금 등의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한다.

단, 서울시와 강원도에서 제작하는 MICE 광고 이미지 제작 관련 개별비용 등은 각 시도에서 일체 부담한다.

제4조(법적 구속력)

본 협약은 상호 협력사항을 정한 것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제5조(상호협력)

- ① 서울시와 강원도는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,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.
- ② 서울시와 강원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,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및 중요 업무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③ 서울시와 강원도는 MICE 공동마케팅의 구체적인 방법, 권한 및 책임 등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양 도시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약하며,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협약서를 5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6월 4일

서울특별시

서 울 특 별 시
관 광 체 육 국 장

강원도

강 원 도
문화관광체육국장

강원도경제진흥원

서울관광재단

SEOUL TOURISM ORGANIZATION

서 울 관 광 재 단
대 표 이 사

강원도경제진흥원

원 장

GWCVB

강원국제회의센터

센 터 장